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731	김도읍의원 등 11인	’24.10.17.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12.23.)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7600	박용갑의원 등 10인	’25.1.20.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4.9.)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9844	문진석의원 등 11인	’25.4.16.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6.3.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

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주거급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안 제3조제1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법률 제 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할 것”을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계좌”를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권자·수급자”로,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

을”을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각각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 5. (생 략) <신 설> 7. · 8. (생 략)	제2조(정의) ----------. 1.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 2. ~ 5. (현행과 같음) 6.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한다. 7.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보장기관) ① · ② (생략)	제6조(보장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 ----------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권자·수급자---------수급권자·수급자----------수급권자·수급자----------임차료 또는 관리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 ② (생 략)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계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조사) ① · ② (생략)	제10조(신청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조사)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 략)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	② ----------

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2. ----------임차료 또는 관리비----------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 ② (생 략)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1.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4. (생 략)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 ⑤ (생 략)	---------- 2.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 3.·4. (현행과 같음) 5.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 ④ · ⑤ (현행과 같음)